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6월 8일, 조지연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6년 7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026.9.1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법안심사제2소위(2026.9.15.)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9.17.)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조지연의원)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질병·입원·사고나 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돌봄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긴급돌봄 체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미비함.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예산 지원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은호)

개정안은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본 사업으로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와 긴급돌봄센터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과 예산 지원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현재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전국 34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신규 설치형뿐만 아니라 거주시설 활용형, 단기거주시설 활용형 등 기존 장애인복지시설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는 기존 긴급돌봄센터 내 최중증 U

NIT을 구성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돌봄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만 두고 있어, 기존 시설을 긴급돌봄센터로 지정하거나 그 운영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현행 사업 운영 방식까지 포괄할 수 있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현행 사업 운영 방식을 법률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긴급돌봄센터의 지정·위탁에 관한 근거를 두고, 현행법 제41조에 위탁 근거를 추가하는 한편, 법 시행 당시 긴급돌봄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시설·기관의 법적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유사한 내용의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백종헌)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